3. 한국거래소 규정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규정 효력에 대한 법원 결정 · 판결 시 조치 근거 마련)
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회원제재금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)
다. KRX금시장 운영규정 (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)
라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인출담당자 등록 의무)
마.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(자기매매회원 중 비실물사업자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이용 명확화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10/2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에 대한 상장규정의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이 있는 경우 상장 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상장규정 효력에 대한 법원의 결정 · 판결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46조 제3항, 제48조 제14항)

— 관리종목지정에 관한 규정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 · 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거나 효력 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— 형식 상장폐지에 관한 규정 효력에 대해 법원의 결정 · 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상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폐지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3) 관련 규정 개정

□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(2026/10/2 개정 · 시행)

— 제58조 제3항, 제59조 제5항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6/10/1 개정 · 2026/10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회원제재금의 감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, 규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회원제재금의 감면 등 관련 조항 정비(별표 1 제4호 가목 및 라목)

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회원의 경우 과징금 수준 등을 고려한 회원제재금 감면 가능 조항을 삭제

— 산출된 회원제재금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과도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재량 감경 근거를 마련

다. KRX금시장 운영규정 (2026/10/26 개정 · 2026/12/1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매입 채널 다변화의 일환으로 KRX금시장을 통한 금지금 매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거래 · 보관 및 결제체계를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자기매매회원 중 비실물사업자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이용 명확화(제3조 제1항 제15호, 제88조 제1호)

—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신속한 시장참여를 지원하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 합리화

□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금지금 보관요건에 따른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(제50조 제1항, 제52조)

— 금지금공급사업자에 한정되던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대상에 한국은행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계좌 개설범위 확대

- 임치계좌 :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하고자 금지금을 임치하여 관리하는 계좌
-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 :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제78조의2에 따른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계좌

□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신설에 따른 분리보관계좌 간 계좌대체 허용(제58조 제1항, 제59조 제1항, 제60조 제1항, 제75조 제1항)

— 분리보관계좌간 계좌대체를 허용 하되, 제78조의2의 협의대량매매에 따른 임치계좌로부터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로의 계좌대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— 반환 및 인출 대상 계좌 명확화 등

• (반환대상 계좌) 분리보관계좌 중 임치계좌

• (인출대상 계좌) 분리보관계좌 중 한국은행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, 혼합보관계좌

□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 매매거래 체결 방식 명시(제75조 제3항, 제75조 제6항, 제78조의2 제3항)

— 증거금제도 적용 및 금지금 매수가능범위 규정

—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의 장내 경쟁매매 또는 협의대량매매로의 매도 금지

• 한국은행의 매도수요가 없는 점 및 외환보유고 금지금의 구분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내매도에 따른 혼합보관체계로의 전환을 제한

—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를 통한 협의대량매매 방식 규정

□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 결제방식 규정(제89조 제3항, 제92조 제1항, 제93조 제1항 제1호, 제93조 제1항 제2호 나목)

— 한국은행의 KRX금시장 거래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활용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

— 결제지시 · 결제금지금 인도 대상 계좌에 한국은행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 추가

라.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6/10/26 개정 · 2026/12/1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한국은행의 KRX금시장 참여관련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, 이에 부합하는 사항을 시행세칙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 인출담당자 등록 의무(제27조 제2항 및 제28조)

—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의 인출담당자 등록의무 규정 및 혼합보관계좌의 인출담당자와의 구분 명확화

• 인출담당자는 사용할 인감 등을 사전에 보관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, 인출담당자는 관련 업무의 수행 시 자신이 인출담당자임을 입증하는 신분증 등을 패용하여야 함

□ 한국은행 전용 보관계좌 인출 반영(제30조 제3항)

—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 폐지 시 처리방법 명시

• 폐지되는 보관계좌에 금지금의 잔량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 또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금지금을 처분하거나 반환·인출받아야 함

□ 금지금의 인출 시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(제32조 제1항)

—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을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 범위에 반영

• (기존)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→ (개정) 자기매매회원은

□ 한국은행의 금지금 인출방식 명시(제32조 제8항)

— 협의대량매수한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에 보관된 금지금 중에서 매수 시기가 빠른 금지금의 순서대로 인출하며, 임치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임의의 순서로 인출

□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의 계좌대체 처리순서 규정(제51조 제1항)

—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매도에 따른 계좌대체는 공급사업자의 분리보관계좌에서 한국은행금지금결제계좌로, 한국은행금지금결제계좌에서 한국은행전용협의대량매수계좌로 계좌대체되는 방식으로 함

□ 기타 조문 정비

— 한국예탁결제원의 금지금 반환 · 인출지점 폐쇄 반영(제31조 제2항 마목 및 제3조 제2호)

— 적격수입금 대상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변경사항 반영([별표 2] 2호)

마. KRX금시장 참가계약서 (2026/10/26 개정 · 2026/12/14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KRX금시장의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신속한 시장참여 및 거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호가입력프로그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을 명확화

— 현행 운영규정 상 은행 및 한국은행(제13조 제2항 제2호, 제3호)은 자기매매회원으로 시장참여가 가능하나,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은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용 근거가 불명확

2) 주요 내용

□ 자기매매회원 중 비실물사업자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이용 근거 마련(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1항)

—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대상 정의에 실물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자기매매회원으로 이용범위 합리화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